

##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원익희 입니다.

□ 의안번호 제719호 SSM(기업형 슈퍼마켓)입점 규제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입니다.

첫째,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을 조속처리

둘째,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하여 SSM 입점을 규제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되면 건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 적정한 기관 즉 국회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게 됩니다.

○ 건의 내용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송 받은 기관은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 발의연월일 : 2009. 9
  - ▶ 발 의 자 : 이재현의원 외 6명
  - ▶ 개정이유 : 기업형수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함.
- SSM(기업형 수퍼마켓)입점 규제 건의안이 채택
  - ▶ 천안시의회, 군산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수원시의회 등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